

현행 약관	변경 약관	개정취지
<p><b>제2조 (정의)</b> 21. (신설)</p>	<p><b>제2조 (정의)</b> 21. “테이크아웃”은 “서비스”를 통해 이루어진 주문에 대하여 “사장님”이 정해진 시간까지 “사장님”의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해당 주문에 따른 상품을 포장하여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p>	<p>· 테이크아웃의 정의를 추가하여, 테이크아웃 서비스가 원활히 제공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p>
<p><b>제7조 (주류의 판매)</b> ② ~ ⑤ (신설)</p>	<p><b>제7조 (주류의 판매)</b> ② “회사”는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이용한 주류 배달의 운영에 관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사장님”들에게 “사장님 사이트”를 통해 고지할 수 있습니다. ③ 전항의 경우, “회사”는 주류 배달에 관한 정책 변경이 있을 경우 해당 변경으로부터 7일 전까지 “사장님”들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법령의 변경 또는 그에 준하는 사정 등으로 인해 즉시 정책 변경이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 “회사”는 변경 후 지체없이 “사장님 사이트”를 통해 “사장님”들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사장님”의 “서비스”를 이용한 주류 판매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사장님”께 해당 내용을 통지함과 동시에 해당 주류 판매를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p>	<p>·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통한 주류 판매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해당 서비스를 통한 적법하고 효율적인 주류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p>

	<p>⑤본 조의 내용은 “사장님”이 주류를 “테이크아웃”을 통해 판매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p>	
<p><b>제12조 (서비스 이용 제한, 서비스 제공의 중단 등)</b></p> <p>①"회사"는 "사장님"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p> <p>7. “사장님”이 제5조 제10항과 달리 “회사”와 정한 시간에 맞추어 상품의 배달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일이 반복되는 경우</p> <p>⑥ (신설)</p>	<p><b>제12조 (서비스 이용 제한, 서비스 제공의 중단 등)</b></p> <p>①"회사"는 "사장님"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각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가 해소된 이후 “서비스” 이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p> <p>7. (삭제)</p> <p>⑥"회사"는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장님”이 본 약관 제5조 제10항 및 제12항에 따른 포장 및 준비를 적시에 완료하지 못하는 일(이하 “조리지연”)이 반복되고, 조리지연 시간이 누적되어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의 품질이 저해되고 “고객”들에게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 특정 시간을 정하여 해당 업체의 노출을 정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경우, 조치 후 지체없이 “사장님”께 그러한 사정에 대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p>	<p>· 조리지연에 관한 처리를 명확히 규정하여, 사장님 입장에서 예측가능한 정책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함.</p>
<p><b>제14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b></p>	<p><b>제14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b></p>	<p>· 사장님의 권리보호</p>

<p>①"사장님"과 "회사"는 각 당사자의 판단에 따라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하여 언제든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p> <p>②계약해지의 효력은 "사장님"과 "회사"가 서로 해지 사실을 인지하고 "회사"에서 "서비스"가 중단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또한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사장님"의 거래에는 본 약관의 조건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p> <p>③계약 내용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유선 등을 통한 명시적인 합의로 이루어집니다.</p> <p>④"사장님"이 계약의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해지 요청을 인지한 날에 즉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고 해지 절차를 준비할 수 있으며, "사장님"은 해지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해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해지 요청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양 당사자는 계약의 해지를 확정할 수 있으며, 해지가 확정되면 더 이상 "사장님"은 해지</p>	<p>①"사장님"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를 원하는 경우 "회사"에 대하여 언제든지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p> <p>②계약해지의 효력은 "회사"에 "사장님"의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가 도달하는 시점에 발생합니다. 다만, 계약해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통해 발생한 "사장님"의 거래에는 본 약관의 조건이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합니다.</p> <p>③계약 내용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서면, 유선 등을 통한 합의로 이루어집니다.</p> <p>④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발생 시 손해를 입은 일방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사장님"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li> <li>2. "사장님"이 "고객"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언어적 또는 육체적 방법을 통하여 위해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 단, "고객"이 "사장님"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사장님"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응하는 경우는 제외함</li> <li>3. "사장님"이 제공한 음식의 조리, 위생, 포장상태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li> </ol>	<p>를 확대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의해지권을 삭제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장님의 계약해지 의사표시의 효력을 명확히 규정함.</li> <li>· 계약내용 변경에 관해 실무에 맞게 규정을 수정함.</li> <li>· 계약의 일방해지를 (i) 즉시해지와 (ii) 시정요청 후의 해지로 분류하고, 그에 맞게 해지사유들을 재분류함. 이를 통해 일방 당사자의 즉시 해지에 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계약해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함.</li> </ul>
--	---	--

요청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⑤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본 계약을 일방적으로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해당 사유로 인하여 손해 발생 시 손해를 입은 일방 당사자는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일방 당사자가 본 약관 제4조, 제5조,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고 상대방이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를 시정할 것을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정하지 않는 경우
2. 일방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고객"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
3. "사장님"이 "고객"에게 어떠한 이유로든 언어적 또는 육체적 방법을 통하여 위해 또는 협박을 가하는 경우. 단, "고객"이 "사장님"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하여 "사장님"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대응하는 경우는 제외함
4. "사장님"이 제공한 음식의 조리, 위생, 포장상태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신체적 및/또는 정신적으로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4. 기타 일방 당사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호 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되는 경우

5. "사장님"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회사"의 직원, "회사"의 업무를 수탁한 제3자 및 그 직원, "익스프레스 라이더" 등에게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6. 기타 위 각 호의 경우에 준하여,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⑤각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청하고, 기한 내에 그러한 시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본 약관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2. "사장님"이 본 약관 제5조,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3. "사장님"의 불성실한 업무수행 또는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p>경우</p> <p>5. 기타 일방 당사자의 불성실한 업무수행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상호 간에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가 손상되는 경우</p> <p>6. “사장님”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회사”의 직원, “회사”의 업무를 수탁한 제3자 및 그 직원, “익스프레스 라이더” 등에게 폭행, 폭언, 성희롱 등 신체적·정신적으로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p> <p>7. “사장님”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어뷰징 행위”를 하는 경우</p> <p>8. “사장님”이 본 약관 제5조 제10항 및 동조 제12항과 달리 “회사”와 정한 시간에 맞추어 상품의 배달이 가능하도록 준비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회사의 해당 “사장님”에 대한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 운영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p> <p>9. 기타 본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p> <p>⑤ (신설)</p>	<p>4. “사장님”의 조리지연(제12조 제6항에서 정의한 바에 따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회사의 “요기요 익스프레스 서비스”의 운영 및 품질 유지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p> <p>5. “사장님”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어뷰징 행위”를 하는 경우</p> <p>6. “회사”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장님”의 실명, 계좌 등에 관한 확인 등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장님”이 그에 관한 협조를 하지 아니한 경우</p>	
<p>제19조 (어뷰징 행위의 제재)</p>	<p>제19조 (어뷰징 행위의 제재)</p>	<p>· 어뷰징 행위에 관</p>

<p>③“회사”는 “사장님”이 “어뷰징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사장님”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사장님”에게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p>	<p>③“회사”는 “사장님”이 “어뷰징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경우, 서면을 통해 “사장님”에게 이에 대한 설명 및 시정을 요청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뷰징 행위”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어뷰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일정 기간 동안 “사장님”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중단하거나, 본 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 또는 “고객”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긴급한 경우 “회사”는 “사장님”에 대한 설명 및 시정 요청 없이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는 지체없이 “사장님”에 대하여 조치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p>	<p>한 업무처리에 관하여 실무에 부합하도록 절차를 정비하여 “사장님”의 권익을 보장하고 불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p>
<p>(신설)</p>	<p><b>제20조 (이벤트 등)</b>          ①“회사”는 “사장님”들께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회사”는 위 제1항의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사전에 “사장님 사이트”에 해당 이벤트의 내용을 공지합니다.          ③“사장님”은 언제든지 본 조에 따른 이벤트를 참여하지 않거나, 이미 참여한 경우 이벤트의 적용 제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p>	<p>· 사장님들에 대한 이벤트 진행에 관한 근거를 수립함.</p>
<p>제20조 ~ 제22조</p>	<p>제21조 ~ 제23조</p>	<p>· 조문번호 수정</p>